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22(2020.11.29.)에 따른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①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② 적용 대상

-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③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④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의3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5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운송 수단 이용자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② (지자체) 관내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운송수단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운송 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지침을 모두 준수

이용자 수칙

- ▶ 마스크 착용
-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운송수단에 대해 추가 행정조치 실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운송 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주요 방역조치 | 1. 다중이용시설

7분

1단계

2단계

3단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미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증점관리시설
경로당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미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유홍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주요 방역조치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마스크착용 의무화	모임·행사	스포츠 관람	교통시설 이용	종교활동	직장근무	고위험사업장		
마스크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접희·사우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500명 이상 행사는 지지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관중 입장(50%)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작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체 권고 (숙박행사 금지)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예: 1/5 수준)	고위험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모임·행사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관중 입장(30%)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10%)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10인 이상 금지
교통시설 이용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10인 이상 금지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10인 이상 금지
종교활동	종교활동	종교활동	종교활동	종교활동	종교활동	종교활동	원격수업 전환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직장근무	직장근무	직장근무	직장근무	직장근무	직장근무	직장근무	원격수업 전환	원격수업 전환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